

## 수원시 청렴메아리

<2021. 11월 2차>

사람중심 더 큰 수원 더 공정하고 더 청렴한 수원시 만들기  
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.

### 2021 수원시 신년화두 : 安民濟生 (편안 안, 백성 민, 도울 제, 살 생)

안전한 시민, 활기찬 경제

□ 청렴사회로 가는길 □ 매일 실천 청렴



###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

- 내 용 : 공무원은 자신,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금전차용 등 거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
#### 관련내용

##### ○ 도입배경

- 공무원이 직무관련자, 직무관련공무원과 금전 차용 등 부당한 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빈발
- 직무관련자와 정상적인 거래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해충돌 방지 장치 필요
- 또한,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직무관련자와 가족 등의 재정적 거래 행위 동시 규제 필요

##### ○ 신고대상 거래행위

-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
- 부동산, 자동차, 선박, 항공기, 건설기계, 그 밖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
- 물품(일생생활용품은 제외), 용역,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 하는 행위

##### ○ 처리절차

- (대상자)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와 금전차용 등 거래하려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신고
- (소속 기관의 장) 신고 된 거래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배제조치 가능

#### 예 시

-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,500만원을 무이자로 사전 신고 없이 차용
- 모 시청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주택을 건축하면서 사전신고 없이 직무관련자인 관내 건설업자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
-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

**청렴** 청렴시책 : 수원시 청렴팀(031-228-2842), 부패청탁금지법 위반신고(국번없이 1398)

**청렴** 공직비리 :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(031-228-3073)

※ 부조리 신고를 제외한 일반 민원은 『열린시장실/시장님보세요』이용